

19세기 濟州 鄉吏層의 戶口 變動*

—大靜縣 東城里를 중심으로

權 奇 重**

- | | |
|----------------------|----------------|
| I. 머리말 | IV. 호구변동과 그 의미 |
| II. 대정현 동성리의 호구분포 | |
| III. 향리층의 구성과 성관의 변화 | V. 맺음말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세기 『제주동성리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제주 동성리 향리층의 호구 변동을 살펴본 것이다. 동성리 鄉吏戶의 호구변동추세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그것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제주지역의 軍政과 戶政이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던 1840년대와 1870년대에 그 차이점은 두드러졌다. 鄉吏 數의 변화 역시 위의 두 시기를 중심으로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와 군현의 향리층에 대한 관리(혹은 향리층의 대응)가 다른 신분지역층과는 차별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 호장이나 기관과 같은 상급향역을 차지하는 성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주향리들이 상급향역을 분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제주향리의 조직인 相贊契 때문으로 보여진다. 상찬계는 일부 향리뿐만 아니라 향리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었다. 또한 상찬계를 통해 향리와 향임 및 군관이 같은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들 사이에 신분의 우열관계는 없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호적대장에서 확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4-AM0010).

**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인되는 직역변동은 신분상승의 측면 외에도 당시 지방사회의 사회경제적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향리층의 호적기재양상은 각 개별 가계의 추적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 주제어

제주, 동성리, 호적증초, 향리, 향역, 향임, 국가정책, 호구변동

K C I

I. 머리말

조선후기 향리층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많은 업적을 쌓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향리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서망국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들이 조선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련하여 발표되고 있으며, 신분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계층으로도 여전히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향리층에 관해 충분히 해명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향리의 身役인 鄕役に 관한 다양한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향리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통치구조 내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이나 역할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위의 문제인식을 염두에 두고 향리층의 호구편제가 균역층을 비롯한 다른 신분층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리층의 호구편제와 변동이 가지는 의미가 일부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주자료는 19세기 『濟州大靜縣東城里戶籍中草』를 이용하였다. 대정현에는 여러 동리의 호적이 산재해 있으나, 이 가운데 동성리 호적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역이 향리들의 주된 활동공간인 邑治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주호적』은 17세기 후반~19세기 초반의 『단성호적』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¹⁾ 이는 제주지역의 부세제도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19세기에도 여전히 人丁과 戶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²⁾ 따라서 『제주호적』의 분석을 통해 19세기 국가정책에 반영된 향리층의 호구편제 양상이 일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II. 대정현 동성리의 호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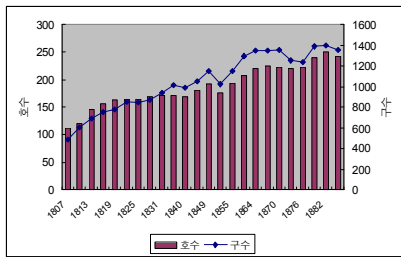
조선시대 국가재원의 중심을 이루는 조세는 田稅, 軍役(혹은 職役), 貢納, 雜

-
- 1)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대장 ‘戶’의 編制 양상—『제주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중초』(1843~1907)의 분석」, 『역사와 현실』 45, 2002.
 - 2) 許元寧, 「19세기 濟州島의 戶口와 賦稅運營」,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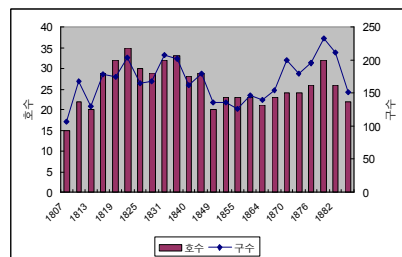
稅·雜役 등이다. 이것은 토지, 人身, 戶라고 하는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설정된 부세제도상의 분류라 할 수 있다.³⁾ 이 가운데 인신과 호를 징발하는 기준이 되는 장부가 호적대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적대장의 호구변동은 국가의 부세정책을 비롯하여 인신과 호에 관한 제반 정책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은 향리층의 호적대장 기재양상을 통해 국가정책과 호적과의 상관성, 호적대장 작성에 있어서의 향리층의 동향 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동성리 전체 주민의 호구변동양상과 향리호⁴⁾의 그것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본 것이 다음의 그림이다.

<그림 1> 동성리 전체 주민의 호구 변화



<그림 1-1>향리호의 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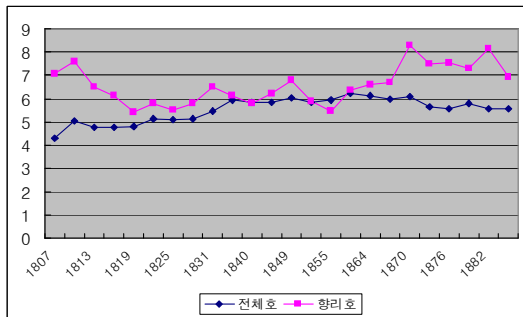
동성리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1807년에서 1885년까지 戶數와 口數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다.⁵⁾ 이러한 동성리 전체 주민의 호구변동양상과 향리층

- 3) 손병규, 『조선후기 재정부조와 지방재정운영—재정 중앙집권화와의 관계』, 『朝鮮時代史學會』 25, 2003, 120면.
- 4) 鄉役을 담당하는 자가 主戶이거나 직계가족으로 호 내에 기재된 경우를 향리호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향리는 신분상 假吏와 구분되는 협의의 향리가 아니라 가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향리, 즉 향역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향리호에는 향리기계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모두 향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역명을 가지고 호 내에 기재되고 있다.
- 5) 대정현의 호당구수는 1896년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호적법의 공포와 관련된다. 제주 대정현 덕수리의 경우 신호적법 이후 호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호당구수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손병규,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丹城 培養里와 濟州 德修里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4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그런데 동성리의 경우는

의 그것 사이에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동성리 전체 주민 가운데, 향리호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그 호구변화를 살펴본 것이 <그림 1-1>이다. 향리호는 1816년부터 전 식년에 비해 호수는 10호, 구수는 50구 가까운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19세기 중엽에는 호수와 구수가 모두 감소하다가 1873년부터는 호수에 비해 구수의 증가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향리호 호구변동은 동성리의 전반적인 호구변동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19세기 중엽 향리호의 호수, 구수가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감소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1873년부터 향리호의 호수의 변화에 비해 구수의 증가가 현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호당구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림 2> 전체호와 향리호의 호당구수 비교



제주도는 호총에 대한 압박에 비해 구총에 대한 압박이 훨씬 심한 지역이었다.⁶⁾ 따라서 구수의 확보가 호수의 확보에 비해 더 절실했을 것이다. 제주도의 평균 호당구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2~3구 이상이 더 많았으며, 향리호의 호당구수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향리 이외의 호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데 비해 향리호는 그 변화선이 상당히 불규칙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같이 향리호의 호구편제는 다른 층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었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

1897년과 1900년 이외의 식년에는 호수 또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자료상의 문제인 것 같다. 1897년과 1900년에는 주민구성이 다른 두 분의 동성리 통적(1890년 1본은 중초)이 남아 있는데 비해 다른 연도에는 한 분의 호적중초만이 남아있다. 두 분의 동성리 통적이 남아있는 것은 1891년과 더불어 3개년도인데, 각각의 분은 원호와 구수가 개별 정리되어 있어, 별도로 파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90년 이후 어떤 이유로 동성리를 양분하여 호적조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추측해 본다면 1890년대 이후의 동성리의 호적중초 혹은 통적은 해당 연도에 주민구성이 다른 두 분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체 주민구성이 확인되는 1885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6) 정진영, 앞의 2002 논문, 238면.

났을까.

향리호의 불규칙한 호구출입의 원인 중 하나는 1840년대와 1870년대 제주지역의 軍政과 戶政에 있어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1847년 제주지역의 군제개혁은 東伍와 馬隊의 증설 및 증액, 別牙兵의 신설 등 편제와 군액의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⁷⁾ 이러한 군제개혁은 漏丁의 확보 및 지역변동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1871년 戶布制의 전국적 실시는 제주의 호구정책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표 1>~<표 3>의 19세기 동성리 주민의 지역별 호구의 출입양상과 계층별 호구 수의 변동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석 시기는 1810년대와 제주의 군정과 호정이 변화를 겪고 있었던 1840년대, 1870년대로 크게 3시기로 구분하였다.

<표 1> 지역별 호구의 출입 양상

분류	식년	1816~1819				1843~1849				1870~1873			
		탈락인원		신입인원		탈락인원		신입인원		탈락인원		신입인원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여성	공사천	2	1.5	2	1.2	0	0.0	0	0.0	2	0.6	1	0.4
	숙부인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1	0.4	1	0.3	0	0.0	0	0.0
	무기재	89	67.4	99	61.5	166	66.7	231	65.2	215	66.0	156	66.4
남성	향임및 학업자	7	5.3	6	3.7	14	5.6	21	5.9	35	10.7	13	5.5
	군관	4	3.0	3	1.9	15	6.0	8	2.3	11	3.4	10	4.3
	군역자	12	9.1	14	8.7	18	7.2	45	12.7	35	10.7	11	4.7
	향리	4	3.0	6	3.7	14	5.6	9	2.5	5	1.5	5	2.1
	공사천	1	0.8	2	1.2	5	2.0	4	1.1	0	0.0	0	0.0
	기타	1	0.8	3	1.9	3	1.2	0	0.0	0	0.0	0	0.0
	무기재	11	8.3	26	16.1	13	5.2	35	9.9	23	7.1	39	16.6
합계		132	100	161	100	249	100	353	100	326	100	235	100

7) 허원영, 앞의 2005 논문, 187~188면.

<표 1>을 통해 몇 가지의 주목할 만한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전시기에 걸쳐 여성의 탈락과 신입 비율이 전체의 6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젊은 여성은 혼인과 관련되어 출입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호구 출입은 호구정책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제주지역은 해녀 등이 채취하는 미역, 전복 등이 중요 공물이었기 때문에 여성 인력의 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⁸⁾ 제주지역에서 여성 주호를 인정하는 것도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⁹⁾ 둘째, 1840년대와 1870년대의 신입자와 탈락자의 수가 반비례하고 있는 현상이다. 즉 1840년대는 신입자의 수가 100여 명 늘어나는데 반해, 1870년대는 반대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1870년대는 호포제의 실시로 호총에 비해 구총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1840년대와 1870년대의 군정과 호정이 호구편제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군역자의 수가 19세기 중엽에 27명 늘어난 것도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보여진다. 반면, 향리 수는 1840년대에 적은 수이지만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표 2>에서 보듯이 향리호가 19세기 중엽에 줄어드는 반면, 중층호와 상층호가 증가한데서 기인한다.¹⁰⁾

8) 金仁澤, 『大靜縣衙中日記』, 1817.8.8, “浦民一人, 折棍五度, 以該里任稅藿, 奪其釜鼎, 樣認訴罪, 稅藿者, 浦村九里所居, 潛女等處, 二束五注之式, 持稅載送貢物船, 以爲官廳貿易.”

9) 金仁澤, 『大靜縣衙中日記』, 1817.11.24, “觀本縣生產文書, 則先書第幾統幾戶, 某姓召史, 以某年月日, 生子某, 其下懸註曰父某姓名, 此乃島俗, 女主戶段也.”

10) 계층의 분류는 처의 호칭과 노비 여부를 복합적으로 감안하였다. 상층호는 妻나 婦가 氏를 호칭하는 경우, 중층호는 처가 씨 이외의 호칭 즉 召史, 父, 女, 德 등의 호칭을 쓰는 호가 그 대상이다. 다만 노비인 경우는 하층으로 구분하였다. 제주는 비인 경우에도 이름 뿐만 아니라 召史에 해당되는 각 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층호는 처가 이름을 쓰는 경우와 노비층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향리호는 분류방식을 달리 하였다. 동일한 분류방식을 선택할 경우, 이들은 중층호에 해당된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중층호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군역층과 향리층의 호구편제양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러한 분류방식을 선택하였다.

<표 2> 계층별 호수 비율

식년	1816		1819		1843		1849		1870		1873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상층호	24	15.3	26	16.0	35	19.4	40	20.9	42	18.9	47	21.3
중층호	98	62.4	98	60.1	105	58.3	118	61.8	147	66.2	142	64.3
하층호	5	3.2	7	4.3	11	6.1	11	5.8	7	3.2	8	3.6
향리호	30	19.1	32	19.6	29	16.1	22	11.5	26	11.7	24	10.9
합계	157	100	163	100	180	100	191	100	222	100	221	100

<표 3> 계층별 호구의 출입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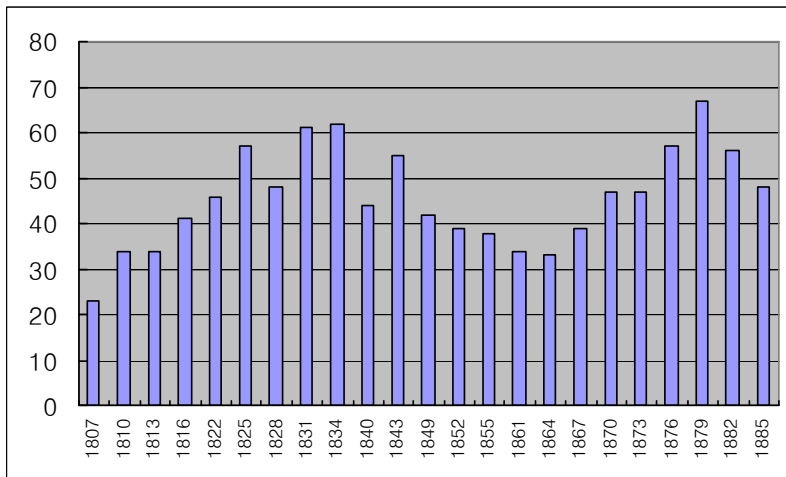
식년	1816~1819				1843~1849				1870~1873			
	탈락인원		신입인원		탈락인원		신입인원		탈락인원		신입인원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상층호	20	15.2	27	16.8	57	22.9	84	23.8	66	20.2	52	22.0
중층호	78	59.1	87	54.0	126	50.6	208	58.9	202	62.0	139	58.9
하층호	5	3.8	20	12.4	11	4.4	16	4.5	5	1.5	3	1.3
향리호	29	22.0	27	16.8	55	22.1	45	12.7	53	16.3	42	17.8
합계	132	100	161	100	249	100	353	100	326	100	236	100

이와 함께, <표 2>와 <표 3>을 통해 향리호에 포함된 신입인원과 탈락인원의 비율이 향리의 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19세기 중엽 향리호에는 탈락인원의 비율이 22.1%인데 비해 신입인원의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아 다른 계층호의 신입인원 증가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입인원의 감소는 향리호의 감소와 관련되는데 1843년에 29호였던 향리호가 1849년에는 22호로 감소한 영향이었다. 이는 향리층에 대한 호구편제양상이 다른 직역층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향리층의 구성과 성관분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Ⅲ. 향리층의 구성과 성관의 변화

제주도의 향리층은 鎭撫吏, 鄉吏, 假吏의三班으로 구분된다.¹¹⁾ 이들은 『제주호적』에 다양한 직역명을 가지고 등재된다. 戶長, 記官, 鄉吏, 作吏, 假吏, 鎭吏, 貢生, 醫生, 書員, 小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직역 가운데 진무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서원이나 소동 가운데에서도 향청이나 향교소속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²⁾ 이러한 분류방법을 통해 제주도 동성리의 1807~1885년까지 향리 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주 동성리 향리 수의 시기별 변화양상



19세기 초엽에 20~30명 선이었던 향리 수는 이후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향리 수의 증감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현

11) 李綱會, 『耽羅職方說』, 「相贊契始末」, “濟吏有三班, 一曰鎭撫吏, 二曰鄉吏, 三曰假吏, 合三吏, 八百餘數也.”

12) 진리와 향청, 향교소속은 본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관아의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향리와 구분하여 살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이 일어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하다. 첫째는 새로운 계층이 향리층으로 편입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예상할 수 있다. 19세기에는 전국적으로 새로운 계층에서 향리층으로 편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제주 역시 새롭게 향리직을 담당한 성관이 나타났다.¹³⁾ 이에 대한 향리층 내부의 길항관계가 향리 수의 변동을 초래했을 수 있다. 둘째는 19세기 중엽의 강력한 국가의 향리 수 감액 정책을 들 수 있다. 국가의 감액정책에 대응하여 지방군현에서는 향리의 명부인 吏案을 국가보고용과 내부용으로 나누어 작성하기도 하였다.¹⁴⁾ 제주지역 역시 실제 향리 수가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공문서인 호적대장에 국가가 제시한 감액분을 기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¹⁵⁾ 셋째는 제주지역과 관련된 국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향리성관의 식년별 향역점유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 대정현 동성리에는 1807~1885년까지 모두 1,083명의 향리들이 기재되어 있다.¹⁶⁾

〈표 4〉 성관별 전체향역점유율

단위 : 명(%)

성관	인원수	%	성관	인원수	%
김해김	255	23.5	청주정	23	2.1
진주강	192	17.7	제주양	20	1.8
고부이	173	16.0	풍천임	20	1.8
남원조	93	8.6	금성정	19	1.8
제주고	53	4.9	평택임	13	1.2
진주하	41	3.8	기타 성관	110	10.2
충주지	39	3.6			
청주한	32	3.0	합계	1083	100.0

* 기타 성관은 성관별 향리 수가 10명 이하인 30여 개 성관의 합

13) 金東稔, 『朝鮮後期 濟州 大靜縣 鄉吏層의 身分變動』, 『史學志』 28, 1995, 225면.

14) 『備邊司臚錄』 249, 哲宗 13年 12月 11日, “一各邑吏額過多, 爲弊多端, 假令本邑任窠爲幾何, 則額數依任窠數定置, 以爲從久次輪差之地, 而原額外加定幾人, 隨闕陞付, 令巡營, 商議於各邑倅定數成册上送是白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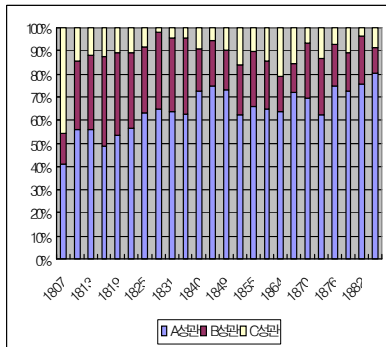
안동에서는 국가보고용인 元案 외에 내부용인 陞付案(奎章閣 일사문고, 古920.051Se81a)을 작성하였다. 승부안에는 136명의 향역자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死亡, 定奪, 元案移上이 半數에 이른다.

15) 張東杓, 『朝鮮後期 地方財政研究』, 國學資料院, 1999, 143~152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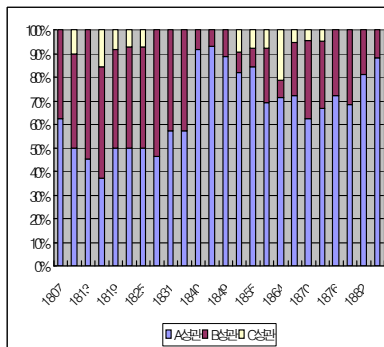
16) 시기별 성관의 향역점유율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계산된 경우도 다수 있다.

<표 4>를 통해 성관별 향역 점유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를 3개의 그룹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김해 김씨, 진주 강씨, 고부 이씨, 남원 조씨 등의 4개 성관이 전체 향역의 65.8%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 성관을 A성관으로 설정하였다. 각 성관별 점유율이 1.2~4.9%인 제주 고씨, 진주 하씨, 충주 지씨 등 9개 성관을 B성관(합 24.0%)으로, 기타 성관을 C성관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성관의 시기별 향역 점유율, 상급 향역 점유율을 살펴본 것이 아래의 <그림 4>와 <그림 4-1>이다.¹⁷⁾

<그림 4> 성관별 전체 향역점유율



<그림 4-1> 성관별 상급 향역 점유율



<그림 4>는 시기에 따라 성관별 향역 점유율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807년 C성관의 급증, 그리고 1810년부터의 B성관의 증가는 새로운 성관이 향리층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19세기 초엽의 향리 수 증가는 이들 성관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향리 수가 감소하는 19세기 중엽에는 A성관의 향리 수는 도리어 증가하고, B성관은 반 이상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B성관에 속한 상당수 사람들이 향역을 배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들 중 상당수가 직역변화를 겪었거나 호적에서 누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19세기 중엽에는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성관의 상급향리의 수 역시 감소하고 있다. 19세기 중엽의 향리 수의 전반적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A성관과 B

17) 일반적으로 호장과 기관, 향리로 칭해지던 부류가 이방과 호방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권기중, 「조선후기 尙州牧 鄉吏層의 存在樣態」, 『朝鮮時代史學報』 28, 2004, 51~52면).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호장과 기관, 향리를 상급향역으로 분류하였다.

성관의 향리 수의 변동이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는 당시 새롭게 제주도에서 시행된 군사정책이나 국가의 향리감역정책에 대한 향리사회내부의 조정 내지 갈등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에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 상급향역을 차지하는 성관의 수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¹⁸⁾ 다른 지역은 19세기 초엽에 이미 한두 성관의 특정 가계가 戶長과 吏房 등 상급향역을 독점하면서 假吏, 小童 등의 하급향역은 다양한 성관에게 분배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¹⁹⁾ 제주향리들이 상급향역을 분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제주향리의 특이한 조직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제주향리들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相贊契를 조직하고 있었다. 정약용의 제자인 李綱會가 기록한 「相贊契始末」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庚戌·辛亥年 사이에 한 명의 향리가 倡言하여 말하길, “吏는 곧 理인데, 우리는 刀筆을 잡고 있되 신분은 천하고, 역은 고되다. 종신토록 다른 사람의 아래를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한 푼의 재산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 어찌 둘째가 700리나 되는 큰 고을의 향리이되 빈곤한 것이 이와 같은가. 비록 그렇다고는 하지만 나 홀로 부를 독차지하는 것은 여럿이 함께 부를 공유하는 것만 못하다. 내가 부유하고 우리 三班 향리들이 모두 가난하다면 비록 부를 이루더라도 무엇 할 것인가. 말하건대 유독 혼자만이 부를 이루려는 자가 있다면 모든 향리들이 그를 비난하여 부가 계승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삼반 향리 300여 명이 참가하여 마음과 힘을 합하여 서로 돕고 함께 하고자 하였다.²⁰⁾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주향리는 1790~1791년 사이에 상찬계라는 조직을 만

18) 제주 대정현 동성리에서 19세기 전 시기에 상층 향리직을 소유한 성관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4성관 이상이였다.

19) 권기중, 「조선 후기 단성현의 향역분포와 계승양상」, 『역사와 현실』 41, 2001; 권기중, 앞의 2004 논문.

20) 李綱會, 『耽羅職方說』, 「相贊契始末」, “庚戌辛亥之間, 有一吏倡言曰, 吏者理也, 吾儕手秉刀筆, 身賤役勞, 終身趨赴於人下, 竟無一產之傳子, 豈爲環七百里大州之吏, 而困貧如此乎. 雖然惟我獨富, 不若與衆, 我富而衆貧(衆通指三吏也), 雖富亦何爲(言獨富則衆貧, 皆啄之, 不得係其富也). 於是束三吏三百之數, 一乃心一乃力, 相與贊助.”

들었는데, 그 조직원의 수는 300여 명이 넘었으며 일부 향리만이 아닌 향리층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계의 소속원들은 19세기 초엽에 와서는 향리뿐만 아니라 중요 향입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梁濟海 모반사건을 계기로 상찬계를 인지하고 있었다.²¹⁾ 제주향리는 이 조직을 통해 부세 수취의 강제성을 높였으며, 자신들 내부의 유대관계를 더욱 친밀히 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의 향리와 관련된 계가 한두 성관에 의해 주도된 것과는 달리 제주지역에서는 향리와 가리 혹은 빈부를 따지지 않고 300여 명의 향리층이 처음부터 참여함으로써 한두 성관이 향리사회에서 독주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찬계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이 계에 좌수·천총 등의 향입·군관직도 소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향리지역과 향입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大靜縣衙中日記』에 기재된 향리를 『제주호적』에서 확인한 후, 그들의 호적등재 양상을 통해 향리호의 호구변동과 그 의미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IV. 호구변동과 그 의미

『대정현아중일기』(이하 『일기』)는 金仁澤이 1817년 3월 30일 대정현감에 제수된 날로부터 1818년 2월 말까지 1년간에 걸친 기록이다.²²⁾ 이 『일기』에는 모두 31명의 향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성리호적중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는 6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제주 대정현 향리들이 邑治지역인 동성리 외에도 下慕里, 德修里, 日果里 등 각 리에 분산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리에 거주했던 자들은 대정현을 대표하는 향리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담당했던 직임과 성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동성리호적중초』와 『일기』에 기재된 자들이 수행했던 직임

21) 『備邊司謄錄』, 純祖 14년 5월 28일, “司, 啓曰, 卽見濟州察理使李在秀別單, 則其一, 本州官人輩, 互樹朋黨, 相贊作契, 凡諸任名, 皆出於此, 故今番濟海之變, 實出於契, 外人不得爲座首干擻故也, 若使爲官長者, 斥私惟公, 則契自革罷, 本島長吏, 另加擇差事也.”

22) 총 3년치의 기록이 남아있으나, 자료를 소장하고 있던 수원의 李鍾學氏의 작고로 현재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은 由吏(이방의 별칭)를 비롯하여, 호장·호방·형리·공방 등 향리조직의 최상층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성관은 호장 하순득 외에 모두 앞서 살펴보았던 A성관으로 분류되는 자이며, 하순득 역시 진주 하씨로서 B성관 가운데에서도 다수의 향리를 보유한 성관이였다. 따라서 이들이 『동성리호적중초』에서 어떤 양상으로 기재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19세기 제주 향리의 호구등재 실상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²³⁾

〈표 5〉 『동성리호적중초』와 『일기』에 동시에 기재된 향리

이름	年 齡	統	戶	본관	戶籍職役	日記職役
趙尙儉	29	3	5	남원	貢生	刑吏
河順得	57	15	3	진주	戶長	戶長
李東煜	27	15	4	고부	記官	官廳色
李命勛	27	16	2	고부	鄉吏	戶房
李春恒	41	16	3	고부	鄉吏	工庫色, 工房色, 工禮吏
姜孝儉	42	20	5	진주	戶長	首吏, 由吏

『일기』와 가장 근접한 시기인 1816년 호적중초에서 이들 6인은 각기 개별 호를 이루고 있으며, 모두 54명의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다. 호당 9명의 인원이 기재되었는데, 이는 동성리의 평균 호당구수인 5명을 크게 상회하는 숫자였다. 이들 가계의 식년별 호구의 등재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3부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춘향과 조상검 가계의 호구등재의 특징은 <표 6>과 <표 7>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두 가계는 전 식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수의 향리를 배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가계에서는 1840년대 이후 소수의 군관과 향임을 배출한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호당구수의 분포는 두 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춘향 가계는 19세기 초반에, 조상검 가계는 19세기 후반부에 10명 이상의 구수를 등재하고 있다.

23) 김동전은 강효검 가계 외에 위 5인의 가계와 김치봉 가계 등을 대정현의 대표적 향리가계로 선정하여 이들 가계의 신분변동 문제를 상세히 다룬바 있다(김동전, 앞의 1995 논문).

19세기 濟州 鄉吏層의 戶口 變動

<표 6> 이춘향 가계호의 식년별 호구등재

분류	향리						향임 및 학업자				군관		군역자		기타		여성		구수합계	호수합계	호당구수
	호장	기관	향리	작리	공생	소동	장의	한량	품관	제술	천총	조방장	가솔	방군	병폐	무기재(남)	여성	인명			
1807			1			1											3		5	1	5
1810			1			2										1	7		11	1	11
1813			1			2										1	6		10	1	10
1816			1		1	1										2	8		13	1	13
1819	1		2														5	5	13	1	13
1822	1		2													2	10		15	1	15
1825	1		4														8		13	1	13
1828	1		3													2	6		12	2	6
1831	1		5													1	4		11	1	11
1834	3		5		1								1			1	6		17	3	5.7
1840	2		4				1					1				1	5	2	16	2	8
1843	3		5				1					1					12		22	2	11
1849	3		3				1			1	1	1		1	1	16		27	2	13.5	
1852	2									1	1		1	1	1	4		10	2	5	
1855	2		1				1			1			1	1	1	5		12	2	6	
1861	1		3				1	1		2					1	12		21	3	7	
1864	1		2	2			1			2					1	14		23	3	7.7	
1867	1		2	2			1	1		2			1			14		24	3	8	
1870	1			3			1			2					1	18		26	3	8.7	
1873	2			2						1	1				3	17		26	3	8.7	
1876	1		1							2					5	14		23	3	7.7	
1879	1									1					6	14		22	3	7.3	
1882	1									1					6	14		22	3	7.3	
1885	1						1	1							5	14		22	3	7.3	
합계	17	13	5	41	10	7	1	8	2	1	16	1	4	1	4	42	236	7	416	50	8.3

<표 7> 조상검 기계호의 식년별 호구등재

분류	향리					향임 및 학업자			군관		군역자		기타	여성			
	호장	기관	향리	작리	공생	품관	병절교위	사과	천총	집사	가솔	양인	무기재(남)	여성	구수합계	호수합계	호당구수
1807	1		1				1					1		3	7	1	7
1810	1		1				1						1	4	8	1	8
1813			1				1						1	4	7	1	7
1816					1		1						2	4	8	1	8
1819					1		1						2	5	9	1	9
1822				2	1		1							5	9	1	9
1825	1			2			1							5	9	1	9
1828	1			2			1							5	9	1	9
1831	1			2			1							5	9	1	9
1834	1			1							1			4	7	1	7
1840	1										1		2	5	9	1	9
1843	1			2							1			5	9	1	9
1849									1	2				7	10	1	10
1852				1					1					7	9	1	9
1855				1					1					7	9	1	9
1861				1					1					8	10	1	10
1864					1				1	1				6	9	1	9
1867					1					1				6	8	1	8
1870					1					3				10	14	1	14
1873					1					3		2	10	16	1	16	
1876				1	1			1		3		1	11	18	1	18	
1879				1	1			1		2		1	12	18	1	18	
1882		1		1		1						2	13	18	1	18	
1885		1										2	10	13	1	13	
합계	8	2	3	17	9	1	9	2	3	2	18	1	16	161	252	24	10.5

두 번째로 이동욱 가계의 호구등재의 특징은 <표 8>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가계는 1852~1867년 사이 향역을 지는 자들이 전무한 반면, 향임과 군관직을 수행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호당구수는 1840년대와 1870년대에 10명 이상이었다.

<표 8> 이동욱 가계호의 식년별 호구등재

분류	향리					향임 및 학업자		군관				군역자			기타	여성		구수 합계	호수 합계	호당 구수			
	호 장	기 관	향 리	작 리	공 생	소 동	품 관	하 제 생	진 무	성 장	조 방 장	기 패	집 사	가 솔	평 역 군	작 리 군	무기 재 (남)				여성	인 멸	
1807			1											1			0	1		4	1	4	
1810			1					1			1			1				4		8	1	8	
1813			1														1	1		3	1	3	
1816	1																1	1		3	1	3	
1819	1																1	1		3	1	3	
1822	1				1												1			3	1	3	
1825	1				1												1			3	1	3	
1828	1				1												1	3		6	1	6	
1831	1					1							1				1	4		8	1	8	
1834	1					1							1					4		7	1	7	
1840	1			2		2					1	1				1	6		14	1	14		
1843	2					2						1				2	4		11	1	11		
1849	1								1			1					8	3	14	1	14		
1852												1	1	2			1		5	1	5		
1855						2						1	1				2		6	1	6		
1861						2						1	1				3		7	1	7		
1864						2						1	1				3		7	1	7		
1867						2						1	1				6		10	1	10		
1870	1					3						1	1			1	15		22	2	11		
1873				1		3						1	1			4	14		24	2	12		
1876				1		4			1				1			1	16		24	2	12		
1879				2		5			1	1			1				15		25	3	8.3		
1882				1		6							1		1	2	14		25	3	8.3		
1885				1		8	1						1				17		28	3	9.3		
합계	7	5	3	8	3	2	41	1	1	1	3	2	1	12	13	2	1	16	145	3	270	33	8.1

세 번째는 이명훈과 강효검 가계의 호구등재의 특징이다. 이 두 가계는 다음의 <표 9>와 <표 10>에서 보듯이 19세기 중반 이후 향역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대신 이 시기부터 다수의 향임과 학업자들이 등재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가계의 호당구수는 19세기 중반부에 10명 이상이였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두 가지의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²⁴⁾ 첫째, 1840년대와 70년대의 호수와 구수의 증가현상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두 시기의 국가정책에 대해 향리층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위 가계들의

24) 하순득 가계는 손자인 일렬이 1849년~1867년까지 外家인 강효검 가계의 솔구로 기재되었다가 사라져 더 이상 호적증초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직역구성이 1840년에서 50년대 초 즉 19세기 중엽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 향역을 지속하는 가계와 향역 대신에 향임이나 학업자로 직역을 변동시키는 가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역변동은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작용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겠으나, 한편으로는 부세수취의 한축을 담당했던 향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을 듯하다.

〈표 9〉 이명훈 가계호의 식년별 호구등재

분류	향리				향임 및 학업자								군관		군역자			기타	여성	인	구수	합계	호수	합계	호당	구수				
	기관	향리	작리	공생	유학	장의	병절교위	품관	품헌	군기감	교생	원생	하제생	접생	천총	조방장	가솔	평역군	방군								무기재(남)	여성	인	구수
1807				1									1	1							2			5	1		5			
1810																														
1813				1											1			1				3			6	1		6		
1816		1					1															4			6	1		6		
1819		1					1															4			6	1		6		
1822			1														1					3			5	1		5		
1825			1														1					3			5	1		5		
1828			1					2														3			6	1		6		
1831			1					2												1		2			6	1		6		
1834	1							3														2			6	1		6		
1840	1										1											2	2	2	8	1		8		
1843	1							2			1						3					6			13	1		13		
1849								1		1		1					2					3	7		15	1		15		
1852											2	1			1							6			10	1		10		
1855											3											8			11	1		11		
1861								1	1		1			1			1					7			12	1		12		
1864					1			1	1		1			1			1					8			14	1		14		
1867								1			2											2	7		12	2		6		
1870						1		1			2											3	8		15	2		7.5		
1873						1					3											4	9		17	2		8.5		
1876					1	2					3											1	11		18	3		6		
1879						2		1			3											1	12		19	2		9.5		
1882					1	2					1											2	12		18	2		9		
1885					3	4																1	11		19	2		9.5		
합계	3	2	4	2	6	12	2	15	2	1	23	2	1	2	2	1	7	2	1	20	140	2	252	31		8.1				

〈표 10〉 강호검 가계호의 식년별 호구등재

분류	향리					향임 및 학업자			군관				군역자			기타	여성						
	호장	기관	향리	작리	공생	품관	품현	하제생	진무	성장	조방장	기패	집사	가솔	평역군	작리군	무기재(남)	여성	인별	구수합계	호수합계	호당구수	
1807			1											1			0	1		4	1	4	
1810			1					1			1			1				4		8	1	8	
1813			1														1	1		3	1	3	
1816		1															1	1		3	1	3	
1819		1															1	1		3	1	3	
1822		1			1													1		3	1	3	
1825		1			1												1		3	1	3		
1828		1			1												1	3		6	1	6	
1831	1					1							1				1	4		8	1	8	
1834	1					1							1					4		7	1	7	
1840	1			2		2						1	1				1	6		14	1	14	
1843	2					2							1				2	4		11	1	11	
1849	1												1					8	3	14	1	14	
1852									1			1	1	2				1		5	1	5	
1855						2						1	1					2		6	1	6	
1861						2						1	1					3		7	1	7	
1864						2						1	1					3		7	1	7	
1867						2						1	1					6		10	1	10	
1870	1					3						1	1			1	15		22	2	11		
1873				1		3						1	1			4	14		24	2	12		
1876				1		4			1				1			1	16		24	2	12		
1879				2		5			1	1			1				15		25	3	8.3		
1882				1		6							1		1	2	14		25	3	8.3		
1885				1		8	1						1				17		28	3	9.3		
합계	7	5	3	8	3	2	41	1	1	1	3	2	1	12	13	2	1	16	145	3	270	33	8.1

1840년대의 제주도 군사정책의 변화, 70년대의 호포제의 실시는 향임이나 학업자 및 군관의 역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여진다. 이 때문에 향리 가운데 몇 성관이 향임을 담당하였거나, 가계원 가운데 일부가 향임이나 군관직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동욱과 조상검 가계에서 향역과 향임을 동시에 지고 있었던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직역변동은 군현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앞서 살펴본 상찬계의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제주지역에서는 향리와 향임 및 군관들이 하나의 계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의 군현 지배가 이들 契員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들 사이의 직역변동이 바로 신분

변동이라고는 보기가 힘들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제주지역만의 특성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군현지배에 있어 향리와 향임의 동반자적 관계는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²⁵⁾

V. 맺음말

지금까지 19세기 『제주동성리호적증초』를 중심으로 제주 동성리 향리층의 호구변동을 살펴보았다. 본문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동성리의 호구변동양상과 향리호의 그것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동성리 향리호의 호구변동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호구변동 추세와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19세기 중엽 향리호의 호수, 구수가 동성리의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감소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1873년부터 향리호의 호수의 변화에 비해 구수의 증가가 현격하다는 것이다. 향리호의 호당구수 역시 동성리의 평균 호당구수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호당구수의 변화폭이 상당히 불규칙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연속되는 두 식년 사이의 戶口의 지속과 탈락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1840년대와 1870년대 제주지역에는 軍政과 戶政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향리층의 호구편제가 다른 신분지역층의 그것과는 차이가 났다는 것은 국가와 군현의 향리호에 대한 관리(혹은 향리층의 대응)가 다른 신분지역층과는 차별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19세기 초엽에 20~30명 선이었던 향리 수가 이후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을 반복하고 있었던 원인을 성관별 분포와 인원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계층의 향리층 편입 및 국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향리층의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상급향역을 차지하는 성관의 수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제주향리들이 상급향역을 분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제주향리의 조직인 相贊契 때문으로 보여진다. 상찬계는 일부 향리뿐만 아니라 향리 전체의 이익

25)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을 대변하는 조직이었다. 상찬계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사실은 이 계에 좌수·친총 등의 향임·군관직도 소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향리와 향임 및 군관에 신분서열의 우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大靜縣衙中日記』에 기재된 향리의 가계를 통해 향리호의 호구변동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분석한 향리가계를 통해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1840년대와 1870년대의 호수와 구수의 증가현상이다. 두 번째는 가계들의 직역구성이 1840년에서 1850년대 초, 즉 19세기 중엽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 향역을 지속하는 가계와 향역 대신에 향임이나 학업자로 직역을 변동시키는 가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역변동은 신분상승의 욕구가 작용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겠으나, 한편으로는 부세수취의 한축을 담당했던 향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을 듯하다. 1840년대의 제주도 군사정책의 변화, 1870년대의 호포제의 실시는 향임이나 학업자 및 군관의 역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향리층은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호적대장에 호구를 등재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군현에서 향역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호적대장에 등재된 사람들의 직역변동은 신분상승의 측면 외에도 당시 지방사회의 사회경제적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하나의 사례로 19세기 향리와 향임의 동반자적 관계는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濟州大靜縣東城里戶籍中草』(23책)
- 『濟州大靜縣東城里通籍』(1책)
- 金仁澤, 『大靜縣衙中日記』
- 李綱會, 『耽羅職方說』
- 『備邊司謄錄』

- 張東杓, 『朝鮮後期 地方財政研究』, 國學資料院, 1999
- 호적대장연구팀, 『단성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 출판부, 1998

- 권기중, 「조선후기 단성현의 향역분포와 계승양상」, 『역사와 현실』 41, 2001
- _____, 「조선후기 尙州牧 鄉吏層의 存在樣態」, 『朝鮮時代史學報』 28, 2004
- 金東桢, 「朝鮮後期 濟州 大靜縣 鄉吏層의 身分變動」, 『史學志』 28, 1995
- 손병규,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丹城 培養里와 濟州 德修里的 사례」, 『대동문화연구』 4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 _____, 「조선후기 재정구조와 지방재정운영—재정 중앙집권화와의 관계」, 『朝鮮時代史學會』 25, 2003
-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대장 ‘戶’의 編制 양상—『제주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 중초』(1843~1907)의 분석」, 『역사와 현실』 45, 2002
- 許元寧, 「19세기 濟州島의 戶口와 賦稅運營」,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5

The Change of Population of Hyangri Class in Jeju in the 19C : Focused on Dongseongri, Daejeonghyeon

Kwon, Ki-jung

It is a study to research the movement of Hyangri class in Daejeonghyeon in Jeju in the 19 C focused on the revision of census registers of dongseongri, Jeju. The movement of Hyangri's population in Dongseongri appears different from the movement of population of all local people. Especially, there was a remarkable difference in 1840's and 1870's as military policy and population policy in Jeju were magnificently changed in the period. Also, the number of Hyangri repeatedly increased and decreased according to the period. It means that the country or gun and hyeon controlled Hyangri-or Hyangri class responded- differently from other classes. On the other hand, Seonggwon occupied most positions for upper Hyangri class like Hojang, Gigwan, etc. compared with other regions. One of the reasons why Hyangri in Jeju occupied most positions for upper class seems to be Sangchangye, which was an organization of Hyangri of Jeju. This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to speak not only for a part of Hyangri but also for the benefit for all Hyangri. Also, it was found that Hyangim, Gungwan belonged to the same organization as Hyangri through Sangchangye. There was equality of their position within them. Accordingly, social and economical dynamic rel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the promotion of positions, when the change of Jikyeok in census registers is analyzed.

Key words: Jeju, Dongseongri, the revision of census registers, Hyangri, Hyangyeok, Hyangim, national policy, the change of population